#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1

발의연월일: 2020. 6. 30.

발 의 자 : 송영길 · 김경협 · 김영주

김영호 · 김홍걸 · 안민석

유건영 · 이낙연 · 이상민

이인영 · 이재정 · 전해철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한과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음.

그러나 남북 당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전단 등 살포행위를 반복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야기되고, 주민들의 생활 및경제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대응포격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6. 2. 25. 선고 2015다247394 판결).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 남북관계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해야 함. 그러나남북간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체들의 전단 등 살포행위로 인해「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에 장애가 야기되고 있음.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있음(헌법 제37조제2항).

이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및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항 중 국민들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며 남북 간 주요합의사항을 준수하여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고자 함 (안 제4조, 제24조 및 제25조).

#### 법률 제 호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 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 5. "전단 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매체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 6.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4장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남북합의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 위
- 3. 전단 등 살포행위
- 4. 그 밖에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행위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제2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벌칙

-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한 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4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
	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u>&lt;신 설&gt;</u>	5. "전단 등"이라 함은 전단, 물
	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
	기억매체 등을 포함한다), 금
	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을 말한다.
<u>&lt;신 설&gt;</u>	6.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
	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남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u>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u>
	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
	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
	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
	는 행위를 말한다.
<u>&lt;신 설&gt;</u>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
	지) ① 누구든지 남북합의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 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게시행위
- 3. 전단 등 살포행위
- 4. 그 밖에 남북합의서에서 규 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지행위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u>제5장 벌칙</u>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u><신 설></u> <신 설>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 은 처벌한다.